

제 호			
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			
소유자	성명(명칭)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		
이륜 자동차	이륜자동차번호		차대번호
	차명		원동기형식
	형식		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
승인 사항	항목	튜닝 전	튜닝 후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제1항,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교통안전공단

직인

위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(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: 일) 이내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